

## 덴마크 언론법

본지는 외국의 언론관계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프랑스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해설(1985년 봄호), 오스트리아의 「언론법(1988년 가을호), 영국의 「반논권에 관한 법률」(안)(1989년 봄호) 등을 번역,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덴마크의 「언론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김상열교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 제 1 조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인쇄인의성명이나 인쇄회사명 그리고 인쇄도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덴마크어로 인쇄되어 국내에 반입, 공중에 배포할 목적을 갖는 간행물에는 인쇄인의 성명이나 인쇄회사명 그리고 인쇄도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 명시된 간행물을 반입, 공중에 배포한 자는 만일 해당 간행물에 인쇄인의 성명이나 인쇄회사명 그리고 인쇄도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 제 2 조

국내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는 편집인의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일 정기간행물에 실제 편집인이 아닌 다른 자의 성명이 기재되었을 경우, 실제 편집인이 책임을 지며, 다른 자의 인지 하에 그 기재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자도 책임을 진다(제 19 조 참조). 또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발행인도 책임을 진다.

### 제 3 조 삭제

### 제 4 조

부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한 자, 그리고 발행이나 배포에 참여한 자는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과 보상의 책임을 진다.

### 제 5 조

국내에서 인쇄되지 아니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한 자, 또는 발행과 배포에 협조한자는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될 경우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과 보상의 책임을 진다.

### 제 6 조

국내에서 인쇄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규정이 적용된다. 편집인과 필자만 처벌책임을 진다(제 7 조 참조). 편집인은 자신이 간행물 기사의 필자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 내용에 대해 처벌책임을 진다. 만약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에 필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고, 발행 시에 필자가 국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하고 있으며, 성년인 자로서 처벌책임에 요구되는 정상적 정신의 소유자인 경우 편집인은 처벌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해당 기사가 편집인의 요구나 협조 하에 작성되었거나,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편집인이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인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명이 명시된 필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편집인과 공동으로 처벌책임을 진다.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필자는, 해당 기사를 편집인에게 양도할 때 편집인이 국내에 거주지나 영주 거주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불만호소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덴마크재판관할권내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위와 같지 않을 경우에 편집인은 성명이 명시된 필자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벌책임을 진다.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필자는, 해당 정기간행물 발행사에 근무하며 편집인보다 낮은 지위에 있지 않다면, 성명이 명시된 필자에 부과되는 처벌책임과 동일한 처벌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편집인이 면책을 원하지 않으며, 또 기사를 양도할 때 원고에 필자가 성명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인은 면책되지 않는다. 유료로 안내광고의 게재를 요청한 자는 그 안내광고에 대한 필자로 간주한다. 유료안내광고를 청구한 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경우, 셋째 문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편집인은 면책된다. 만약 간행물 발행사의 광고사업이 발행인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광고에 관한 편집인의 책임은, 광고게재결정권자의 성명이 광고물에 대한책임자로 등 간행물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만 광고책임자에게 전가된다. 보상에 대한 책임은 편집인과 필자에게만 부과된다(제 7 조 참조).

편집인은 간행물의 내용이 법률에 저촉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에 저촉된 간행물 기사에 필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고, 필자가 덴마크재판관할권내에 있으며, 성년이고 또 정상적인 정신의 소유자이며 셋째 문단에 명시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경우, 편집인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성명이 명시된 필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필자는, 성명이 명시된 필자와 동일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하고, 간행물 발행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기사를 양도할 때 편집인이 덴마크재판관할권내에 있지 않을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의 규정에 언급된 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상책임을 판결을 받은 자나 발행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없는 경우 보상책임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상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 **제 7 조**

국내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로 인하여 형법 제 98 조~제 102 조, 제 103 조 첫째 문단, 제 110 조 첫째 문단, 제 110 조, 제 111 조 ~ 제 113 조, 제 116 조, 그리고 제 118 조가 규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 자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 8 조**

호위, 광고 또는 선전 등의 형식이나 내용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그의 활동을 모독하여서는 안된다. 신문사가 발행하는 호위, 내용, 목차 등은 그것과 관련이 있거나, 그것이 비롯된 신문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 9 조**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실제적 성격의 기사게재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여론으로부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정정보도가 있을 때는, 무료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정정보도의 요구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가까운 친지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기사가 보도된 후 1 개월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내용에 한하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제 3 자가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문제가 된 간행물의 편집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용의가 없을 때에는 정정보도문의게재를 요구한 자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야 한다. 이 회신에는 정정보도문 게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정당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심사를 취소정정위원회(Board of Denial and Correction)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취소정정위원회의 주소 또한 위 회신에 명기해야 한다. 취소정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사실이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불만호소인은 문제기사에 대해 심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결과, 또는 다른 간행물에 보도된 정정보도문에 관한 참고기사를 해당매체에 무료로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해당매체가 불만호소인이 원하는 형식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에 응했을 경우는 참고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한 자에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구가 있을 후 첫번째 발행호에, 일간지인 경우는 늦어도 두번째 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정정보도문 게재요구를 취소정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정정보도문이 간행물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편집인은 동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은 후 첫번째 발행호에, 일간지인 경우는 늦어도 두번째 발행되는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정정보도문은 간행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활자를 사용하며, 독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게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정정보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한 자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후 1 개월 내에 취소정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 정정보도문이 해당매체의 같은 호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었거나, 논평되었을 경우, 그 토론이나 논평은 사실적 자료의 서술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 편집인이 자사의 매체에 다른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비평이나 자료를 전재하였는데 해당 정기간행물이 정정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에 관한 참조기사, 또는 불만호소가 제기되었다는 안내문 등이 게재되었을 경우, 동 편집인이 이를 인지하였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문 그대로 이를 무료로 자신이 편집한 간행물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취소정정위원회가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한 후, 정정보도문이나 이에 관한 참조기사, 또는 불만호소가 제기되었다는 안내문의 게재를 거부하여 편집인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정정보도문, 이에 관한 참조기사, 또는 안내문을 법원의 판결이 있을 후 첫번째 호나, 일간지의 경우 늦어도 두번째 호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이 조의 각 조항들은 최소한 1 개월에 1 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만 적용된다.

## 제 10 조

최소정정위원회는 의장인 대법원판사 1 인과 언론기관 대표자들 가운데서 선출된 2 인 등 3 인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나머지 2 인 중 1 인은 덴마크 일간신문협회의 추천을, 다른 1 인은 덴마크기자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덴마크주간지·전문지발행협회 소속 간행물에 관련된 사안인 경우, 덴마크기자협회 추천에 의해 임명된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 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위원과 교체한다.

위원회는 제 9 조 첫째 문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간행물 편집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요구된 정정보도문의 성격과 내용을 감안하여 편집인이 다른 형식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편집인의 정정보도문게재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정정보도로 인하여 법률규정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편집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사의뢰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 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의뢰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현행 규정들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벌금액이 100 크로네를 넘는 경우, 벌금부과 결정을 받은 자는 거주지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심청구는 지방법원 합의부(3 인의 판사로 구성)에서 담당한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벌금부과의 의무를 진 자에게 법정출두를 요구해야 한다. 법정출두에 대한 통지는 벌금부과의 의무를 진자와 최소정정위원회에도 보내야 한다. 재심청구에 관한 심리는 비공개로 열리며, 참석자 모두에게 구두발언의 기회를 준다.

위원들의 활동비를 포함하여,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지출하며, 국가 예산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제 11 조

최소정정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으로 인해 편집인 또는 필자가 처벌책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해당매체에 판결문을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자에 대해서만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편집인을 별도로 소환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이 해당판결문게재요구서와 함께 간행물 편집인에게 발송되었을 경우, 편집인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된 후 발행되거나 판결문 수령시 인쇄가 완료되지 않은 첫번째호나, 일간지인경우 늦어도 두번째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는 무료이며, 활자는 해당 간행물에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을 사용한다. 게재장소는 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발행사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 편집인이 다른 간행물의 내용을 인용보도 하였는데, 후자의 편집인이나 필자가 처벌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전자의 편집인은 이를 인지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사의 간행물에 재판의 결과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 12 조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편집인에게 부과된 보상액이나 재판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편집인에 내려진 판결을 근거로 하여 재산압류를 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편집인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발행인은 책임을 진다. 이 경우도 재산압류를 할 수 있다. 발행인이라 함은 그의 이름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 13 조

간행물을 압수할 경우, 형법 제 77 조에 의거,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간행물의 일부분이 압수의 원인이 된 경우, 그 부분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압수대상 이외의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인쇄에 사용된 동판이나 형판 등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사용된 활자의 압수 대신 폐기처분을 할 수도 있다.

3. 국내에 반입된 외국간행물이 압수대상인 경우, 판결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간행물을 국외로 내보낼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수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4. 공중이 입수할 수 없거나, 배포의 위험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본품은 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 14 조

외국에서 인쇄된 간행물이 처벌대상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국내 배포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내 배포의 금지는 판매하기 위해서 또는 배포하기 위해서 간행물을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요구된다. 위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간행물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간행물이 우편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포금지의 조치와 집행에 관해서는 소송절차법 제 800 조(참고 제 701 조 둘째 단락)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 15 조

간행물이 평결에 의해 압수되거나, 판결에 의해 몰수된 경우, 또는 국내 배포가 금지되었을 경우에 경찰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State NewsPaper)에 공고하여야 한다. 압수, 몰수 또는 배포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첫째 문단 첫째 줄의 공고 후나 공고 전에 압수, 몰수 또는 배포금지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간행물의 배포나 판매는 금지된다. 간행물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경우, 직책상 당연히 간행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 된다.

### 제 16 조

이 법에서 정기간행물 편집인이라 함은 그의 성명이 편집인, 발행인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동지의 내용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정기간행물의 일부 내용에 관해서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일부분의 편집책임자임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편집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정기간행물이 명실상부한 전문지이며, 문제부분의 편집책임자가 별도로 간행물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 발행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정기간행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기간행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그림 위주의 제작물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정기간행물 제작이 인쇄나 다른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 17 조**

경찰총장(Chief Public Prosecutor)은 간행물내용과 관련하여 기소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검찰은 제 8 조 첫째 문단의 위반사항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호외, 광고 또는 선전의 몰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

#### **제 18 조**

간행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처벌이나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원고는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불함이 없이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송절차법 제 253 조, 제 383 조 참조).

#### **제 19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은 벌금형으로 한다. 단 제 2 조 둘째 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사항이 의도적이었을 경우, 그 처벌은 체형으로 한다. 제 9 조와 제 11 조를 위 만하였을 경우, 그 처벌은 벌금형으로 하되 배포의 정도에 따라 벌금액을 정한다.

제 8 조와 제 15 조 둘째 문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의 법에 더 중한 처벌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처벌은 벌금형이나 체형으로 한다.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반국가적인 간행물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간행물에 인쇄인이나 인쇄회사명 그리고 인쇄도시명이 사실과 달리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을 체형까지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징수되는 벌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 법의 위반은 치안상의 문제로 취급한다.

#### **제 20 조**

인쇄된 간행물의 내용과 관련된 책임문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제 21 조**

이 법은 193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1851년 1월 3일 시행된 언론법은 폐지된다.

1969년 11월 28일 제정된 법 524호는 다음과 같은 효력발생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제 2 조**

동법은 법령집에 수록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3 조**

동법은 덴마크자치령군도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왕의 요청이 있을시 동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